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동안 전체적인 법안에 대한 방향과 지향점을 다시 정리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함
- 시행 15년동안 변화된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의 변화가 필요
- 2007년 차별금지를 담은 새로운 법 제정 과정에서 초기법안에 제시되었던 실효성있는 주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채 제정시행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내용들의 반영 필요
- 제정시행당시 시행령에 명시되었던 단계적 적용에 대한 삭제 및 정리 필요
- 시행 15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진행된 소송 및 진정 과정에서 법의 적용과 해석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방향>

-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 확대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차별행위 판단에 대한 조건 문구 삭제 장애인에 대한로만 규정 차별 판단의 범위 확대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우선 적용 명시 등 소송이나 차별시정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 시행령에 위임한 기본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본법에 명시하여 법 적용에 원칙과 의무 강화
- 기존법안에 미비했던 정신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 추가
- 구성이나 순서 내용상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삭제를 통해 법 전체의 체계 완성
- 재난상황에서의 차별조항추가,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 추가 및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등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 강화를 통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정 사항>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장애와 장애인)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목적 수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규정 반영

○ 제4조 (차별행위)

-제32조의 괴롭힘 행위에 차별행위 추가

○ 제5조 (차별판단)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경우에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로 규정,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차별로 판단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권익옹호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의무 추가

-정책 수립 시행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선적용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적용

○ 제9조의 2 (법적용의 원칙)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

-이 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적용에서 배제하면 안된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직장보육서비스 내용 추가

<제2절 교육>

○ 제13조(차별금지)

-교육징계절차(학폭위, 교권위 등)에서의 장애를 고려한 판단 의무 규정

○ 제14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이 법률 규정 준수 감독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법규정 준수 여부 확인 의무

○ 제19조의2(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재난 및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제29조의2(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금지)

-장애인의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절, 건강권 등>

○ 제30조의2(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및 행위금지

-사회적 지위·관계·장애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는 표현 및 행위금지

-언론, 보도,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 내용 포함 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법적,정책적 조치 마련의무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제46조(손해배상)

-이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46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이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 제48조의3(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차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 및 기관 등에 신고, 신고자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세부내용>

제1장 총칙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사항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 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u>장애인</u> 에 <u>대한</u>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u>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u>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u>평등권을 실현하여</u>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를 이유로 (삭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규정 -헌법과 국제인권협약 기준 제시	-‘장애를 이유로’ 라는 소극적 기준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반영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u>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u>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정의 반영	-손상을 기준으로 정의된 장애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준으로 반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	-1. 광고물 관련 법률 기준 추가	-정의 관련하여 폐지 또는 신설된 법안의 내용 반영

<p>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u>를 말한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u>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 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u>」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u>이용</u>·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u>정신건강복지법</u>」 제3조제4호에 따른 <u>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u></p>	<p>-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폐지 삭제/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 추가</p> <p>-15 복지시설 범위에 이용시설 추가 /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건강증진 시설 추가</p>	<p>-이전 복지시설의 범위가 거주시설 위주로 규정, 현재 이용시설에서의 차별 다수 발생함으로 정의규정에 이용 시설 포함</p> <p>-정신장애인의 차별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포함</p>
--	---	---	---

<p>다.</p> <p>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p>	<p><u>의료기관을 제외한다</u>)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18. “<u>성적지향</u>”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u>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u></p> <p>19. “<u>탈시설</u>”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p> <p>20. “<u>건강권</u>”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p> <p>21. “<u>의료인 등</u>”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p> <p>22. “<u>의료기관 등</u>”이라 함은 「의료</p>	<p>신설 18. 성적지향 정의 추가</p> <p>신설 19. 탈시설 정의 추가 (탈시설지원법 발의안 규정 반영)</p> <p>-18-->20</p> <p>-19-->21</p> <p>-20-->22</p>	<p>-탈시설 등 자립지원 과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차별받지 않고 안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규정 추가</p>
---	---	--	--

	<p>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23.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u>또는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될 혐오표현 및 행위를</u> 말한다.</p>	<p>-21-->23. 괴롭힘 범위에 혐오표현 및 행위 추가</p>	<p>-최근 혐오표현 및 행위 등 혐오차별 다수발생 이에 따라 괴롭힘 조항안에 혐오를 포함하도록 규정</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p> <p>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p> <p>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p> <p>3.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p>	<p>-‘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p>	<p>-장애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장애인이 받는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상황 발생, 이에 불필요한 조건인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p> <p>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p>	<p>4.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p> <p>5.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5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p> <p>7.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p>	<p>-<u>신설 4. 괴롭힘 행위 추가</u></p> <p>-4.--> 5.</p> <p>-각호 위치 변경에 따라 내용 변경</p> <p>-5.--> 7.</p>	<p>-제32조에 괴롭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칙의 차별행위(제4조)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행위로 판단받지 못하고 본법의 적용이 어려운 지점 발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별행위 내용에 “괴롭힘 등” 추가</p>
--	---	---	---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p>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u>제5호까지의</u>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p> <p><u>8. 그 밖에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u></p>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u>정책·관행·절차</u>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신설</p> <p>-‘정당한 편의’ 범위에 ‘정책·관행·절차’ 포함</p> <p>-③--> 제5조 ②로 이동</p>	<p>-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시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p> <p>-물리적인 서비스 편의시설 중심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 이에 정책과 제도안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으로 내용이 범위 확대 및 강화</p>
--	---	---	--

<p>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p>			
<p>제5조(차별판단)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아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u>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u>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제5조(차별판단)</p> <p>①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u>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u>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②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p>-①항 삭제 -‘성별’ 위치 변경</p> <p>-② 제4조 ③-->제5조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p>	<p>-‘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의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 ‘성별’을 맨 뒤쪽으로 위치 변경 (전체 일괄적용)</p> <p>-현행조항에서 예외적용을 차별로 판단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부득이한 사항이라해도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예외일 뿐임을 명시. 또한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도록 규정</p>
<p>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u>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과거 장애 경력이 있었던 자 및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자를 차별하</u></p>	<p>-‘장애’를 ‘장애인’을 중심으로 변경</p>	<p>-차별받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법을 재구성, 단순히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 강화</p>

	여서는 아니 된다.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p>	<p>-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등'으로 표시</p> <p>-<u>신설 ③</u></p> <p>-<u>신설 ④</u></p> <p>-<u>신설 ⑤장애인권익옹호 및 차별예방 교육 규정</u></p> <p>-<u>신설 ⑥장애인당사자단체 참여 규정</u></p>	<p>-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등'으로 표시하여 의미 명확화</p> <p>-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판결 다수발생 (예: 공직선거법에 장애관련 편의제공 내용 부재로 선관위에서 편의제공 의무를 하지 않고 있음)</p> <p>- 장애인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를 고려하여 법령·정책을 집행할 것을 의무화</p> <p>-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관련교육 규정마련, 명확한 교육 내용 제시를 통해 장애인차별 및 권익옹호에 대한 교육 의무화</p> <p>- 본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 당사자 중심의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 등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보장안됨, 이에 관련규정 추가</p>

	<p>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2(<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u>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 <u>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u>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u>보장</u>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와 <u>제3항에 따른 참여의 방식 및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의무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p> <p>-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p> <p><u>-신설 ③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u></p> <p>-④ ③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방식 및 절차 규정 포함</p>	<p>-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을 통한 장애인차별사안 대응이 범위가 매우 넓음, 또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이미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추가</p> <p>-실태조사 진행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방식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장애를 사유로' 삭제</p>	
	<p>제9조의2(법적용의 원칙)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p>	<p>-<u>조항 신설</u> cf. 수정제안의견 구체적인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p>	<p>-본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발생, 법에 열거 및 예시되어있는 편의내용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법에 직접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정당한 편의제공의 종류로 판단해야 함</p>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사항	개정이유
<p>제10조(차별금지)</p> <p>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0조(차별금지)</p> <p>②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 ②--> 제10조 ② 이동</p> <p>-②-->③ 변경</p>	<p>현행법률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의 내용은 명백한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제10조로 이동</p>
<p>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p> <p>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p>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p> <p>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p>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 차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와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p> <p>②사용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u>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u>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 <u>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의 설치·운영 및 보조인의 배치</u></p> <p>7. <u>원활한 수유지원, 자녀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u></p> <p>8. <u>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u>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u>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6. 세부기기 등 삭제--> '보조기기 설치 운영 및 보조인 배치'로 범위 규정</p> <p>-신설 7. 직장보육서비스 내용 추가</p> <p>-신설 8. 그 외 필요한 사항 추가</p> <p>-②-->제10조로 이동</p> <p>-③-->② 단계적 적용 범위 삭제</p>	<p>-6. 정당한 편의 종류는 새로운 기기의 개발과 사회변화속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 또한 현행법의 내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구나 방법 등도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p> <p>-7. 여성조항에 있었던 직장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여성 남성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고용규정으로 이동시켜 배치</p>
<p>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p> <p>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u>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u>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p> <p>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u>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나 의학적 검사</u>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질문이나’ 추가</p>	<p>-채용 이전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도 차별행위이지만 규정이 미비하여 내용 추가</p>

제2절 교육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13조(차별금지)</p> <p>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차별금지)</p> <p>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에 대해 전학을 강요하거나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교육책임자는 장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p>	<p>-① 삭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차별행위 원칙 포함 수정</p> <p>-③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p> <p>-④ ‘장애를 이유로’ 삭제</p> <p>-신설 ⑨ 교육징계절차(학폭위, 교권위 등) 내용 추가</p>	<p>-법의 기준을 두지 않아도 모든 학교가 해당되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p> <p>-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발달장애학생이 도전행동으로 인해 회부되는 사건 다수 발생, 이에 관련절차에서의 장애고려를 위한 내용 추가</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6.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 6. 징계절차에서의 편의제공</p> <p>-6.-->7. 이동</p> <p>-③ 단계적 적용 범위 삭제</p>	<p>-징계절차에서 현재 관련 편의제공 조항이 미비하여 추가 규정</p>
	<p>제14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및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조항신설 :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복지법' 해당규정 반영</p>	<p>-법 제정당시 학교를 중심으로만 내용 구성, 현재 각종시험에서의 편의제공 등 차별행위 적용이 어려우므로 추가내용을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중심으로 반영하여 추가</p>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u>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u>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p> <p>⑥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이 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①‘장애를 이유로’ 삭제</p> <p>-④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삭제</p> <p>-<u>신설 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본법 준수 여부 규정</u></p> <p>-<u>신설 ⑥ 타 법령의 인.허가 과정에서 본법 준수 여부 규정</u></p>	<p>-재화 용역에서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차별행위 다수 발생, 가맹점 형태의 매장도 추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조항 신설</p> <p>-다양한 인가 허가 관련법률(예: 건축법 등)에서 관련업무 진행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필요 [참고 법령]¹⁾</p> <p>-독일 식품접객업법제4조 (1) 2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⑧항</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u>제한·분리·배제·거부</u>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u>제한·배제·분리·거부</u>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p> <p>-제한·분리·배제·거부-->제한·배제·분리·거부 (나열 순서변경)</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p> <p>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u>정당한 편의의 제공을</u>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u>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u>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u>규정한 내용</u></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p> <p>③<u>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u>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u>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1.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출입문, 위생시설, 피난 및 대피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p>2.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보조인력(지원인력)의 배</p>	<p>-③ 수정 : <u>정당한 편의제공 각호로 정리 추가</u></p> <p>-④ 삭제</p>	<p>-시행령에 있는 관련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p>

<p>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치</p> <p>3.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p> <p>4.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p> <p>5. 그 밖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p> <p>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u>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p> <p>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u>장애인</u>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u>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인력 및 호출수단.</u></p>	<p>-③ 불리한 요금 제도 적용에 이유가 되는 부분 삭제</p> <p>-④ 정당한 편의제공 기본내용 추가</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 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알기 쉬운 이용 및 대피 안내, 그 밖의</u>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 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p> <p>-⑧ 삭제</p>	
	<p>제19조의2(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p> <p>① 누구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하 ‘안전관리상황’이라 한다.)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p> <p>1.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p>	<p><u>-조항신설</u></p>	<p>-지진, 홍수 등 재난상황과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 기후위기 등 새로운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므로 배제되면서 위기상황에 대응이 어려움, 이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을 강화</p>

	<p>2.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장비 및 용품의 안전점검 및 개선</p> <p>3.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p> <p>4.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p> <p>5. 그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p> <p>① <u>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u>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u>장애를 이유로</u>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u>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u>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p>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p> <p>① <u>누구든지</u>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u>장애인에게</u>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u>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쉬운 말 설명,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u></p>	<p>-①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포괄 수정 / ‘장애를 이유로’ 삭제 / ‘장애인에게’로 변경</p> <p>-② ‘쉬운 말 설명’ 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p>	

<p>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 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p> <p>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p>	<p>제21조(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p> <p>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21호·제22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한국수어, 문자, 음성, 쉬운 말 설명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p>	<p>-제21조 전면수정 : 제21조 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제21조 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 3(방송·통신 출판에서의 차별금지)로 분리하여 수정</p>	<p>-정보통신은 통신에 대한 서비스제공 유형이고, 의사소통은 정보접근 방식인데 두가지 내용이 하나의 법조항으로 규정되면서 제대로된 편의제공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법의 구성도 매우 복잡함. 이에 내용을 분리하여, 전반적인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그리고 방송 등 분야별 내용으로 재구성</p>

<p>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p>	<p>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들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p>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 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p>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p>			
--	--	--	--

<p>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의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p> <p>①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전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p>	<p><u>-조항신설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u></p>	
	<p>제21조의3(방송·통신·출판에서의 차별금지)</p>	<p><u>-조항신설 : 방송·통신·출판에서의 차별금지</u></p>	

	<p>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우리말 녹음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말 녹음 추가)</p> <p>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한 경우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p> <p>④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p>		
--	--	--	--

	<p>양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편의의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개인정보보호)</p> <p>④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2조(개인정보보호)</p>	-③ 삭제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별도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
	<p>제22조의2(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의무)</p> <p>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조항신설</p> <p>-‘노력’하여야-->‘마련’하여야</p>	<p>-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제조업자에 대한 제23조 제2항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노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의무 강화</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② 삭제 (제22조의2로 별도 규정)	

<p>노력하여야 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읽기 쉬운 자료’ 추가</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p> <p>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p> <p>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p>	<p>-① 2항의 각호 변동에 따라 수정</p> <p>-②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본법에 각호로 정리</p>	<p>-시행령에 있는 관련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p>	<p>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p>2.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p> <p>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p> <p>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p> <p>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p> <p>-④ 삭제</p>	
---	--	---	--

<p>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u>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및 관광지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보조 인력 및 장비, 기기의 이용 등에 관한 정보 	<p>-시행령에 정당한 편의를 본법에 각호로 정리</p> <p>-시행령에 있는 관련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p>
--------------------------	--	--	---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공 및 안내</p> <p>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p> <p>-④ 삭제</p>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p> <p>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p> <p>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u>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u>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u>다음 각호의</u>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시행령에 정당한 편의를 본법에 각호로 정리</p>	<p>-시행령에 있는 관련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재화.용역 관련법률 모두 동일하게 변경)</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배치 3.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5.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6.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7.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u>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장애인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등</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활동(체육활동관람 포함) 이루어지는 공간의 시설의 편의에 대한 규정 추가 <p>③ 시행령 내용 추가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p>	
--	---	--	--

<p>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필요한 시책을 <u>마련</u>하여야 한다.</p>	<p>-④ 삭제</p>	
--	---------------------------------	--------------	--

1) 독일 식품접객업법(Gaststättengesetz) 제4조(거부사유)

(1)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를 거부한다.

2a. 2002년 11월 1일 이후 첫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접객을 위한 영업용 객실을 장애인이 배리어프리(barriefrei)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 2002년 5월 1일 이후 상당한 개축 또는 허가의 연장을 위해 부여되었거나 계획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p> <p>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p>	<p>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p> <p>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p>	<p>-제26조 조항위치변경</p> <p>-② 각호변경으로 제6호 제7호로 변경</p> <p>-1. ‘허가,신고,인가 등’-->‘처분,신고,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로 변경</p> <p>-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 추가</p>	<p><u>(26조 조항에 대한 분리 등 필요 국민)</u></p> <p>-허가, 인가 등은 모두 ‘처분’의 일종으로 간략하게 정리</p>

<p>초래하는 경우</p> <p>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제4항의 처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p>	<p>초래하는 경우</p> <p>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제4항의 처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p>⑥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p>	<p><u>-신설 ④ :처분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u></p> <p>-④-->⑥ 이동</p> <p><u>-신설 ⑤ :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전문가의 의견 청취 요건 규정</u></p> <p>-⑤-->⑧ 이동</p> <p>-④-->⑥ 이동</p>	
--	--	--	--

<p>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p>	<p>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⑦ 사법기관 및 기타 권리분쟁·인권침해·징계사건에 관한 조사·판정(조정·중재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사법기관 등'이라 한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 등은 해당 장애인이 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⑧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인적 지원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⑨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p>	<p>-⑥-->⑦ 이동</p> <p>-권리분쟁·인권침해·징계사건에 관한 조사·판정(조정·중재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기관으로 수범대상 범위 확대</p> <p>-⑤-->⑧ 이동</p> <p>-⑦-->⑨ 이동</p>	<p>-사법기관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의무도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추가하여 확대적용</p>
---	--	---	--

<p>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⑩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참정권)</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p>	<p>제27조(참정권)</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3.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 보조원의 배치 5. 그 밖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수어, 점자, 음성, 이해하기 쉬운 자료·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수어,</p>	<p>-② 참정권에서의 편의지원을 각호로 정리</p> <p>-③ 정보제공방법 세부 규정 추가</p>	<p>-시행령에 있는 관련내용을 본법에 각호로 규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강화. 기타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p>

	<p>점자, 음성, 이해하기 쉬운 자료·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p>		
--	---	--	--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p> <p>①누구든지 장애인의 <u>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u>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u>장애를 이유로</u>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u>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p>	<p>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p> <p>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u>수유, 육아, 양육 등에 관하여 장애인</u>의 <u>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u>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인의 입양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u>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u>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u></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인의 모·부성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① 수유, 육아 추가 / 모부성권 보장을 세부적으로 내용 추가</p> <p>-② 장애를 이유로 삭제</p> <p>-⑤ 차별행위 세부 내용 추가 / 지원, 감독은 삭제</p> <p>-신설 ⑥ :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 의무 규정</p>	
<p>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p> <p>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p>	<p>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p> <p>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p>	<p>-② 장애를 이유로 삭제</p>	

<p>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u>지원책</u>을 <u>강구</u>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u>성에 대한 편견·관습</u>,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책</u>을 <u>마련</u>하고, <u>장애인의 성</u>에 대한 <u>사회적 편견·관습</u>,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지원책에 대한 내용 추가</p>	
	<p><u>제29조의2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u></p> <p>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조항신설</u></p>	<p>-장애인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차별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규정 마련</p>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현행법률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 의 차별금지)</p> <p>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p>	<p>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 의 차별금지)</p> <p>① <u>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u>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u>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u> 등의 구성원은 각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u>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u>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u>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u>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u>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u>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취학</p>	<p>-‘생활공동체’ 추가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p> <p>-신설 ② 차별에 대한 기본원칙 내용 추가</p>	<p>-법 제정 당시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이 거주시설 중심으로 논의되어 규정이 들어가게 됨, 이에 현재 확대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공간과 이용공간으로 범위 확대</p>

<p>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u>등</u>(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u>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u> 가족 등과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이 복지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⑦ 친권포기각서 등은 현재 요구하지 않음으로 삭제</p> <p>-<u>신설 ⑧ : 복지시설 이용시 차별행위 금지</u></p>	
	<p>제30조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p>	<p>-<u>신설 제30조의2 :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u></p>	<p>-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책이 없이 지역사회 자립이 매우 어려움, 이에 관련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라도 규정을 넣어 자립생활지원 강화</p>

	<p>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을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p> <p>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u>의료행위에 있어서</u>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u>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u>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u>장애인의 성별</u>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p> <p>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u>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u>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u>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u> 등을 적극적으로 <u>고려하여야 한다.</u></p> <p>③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u>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u> 등을 고려하여 <u>정당한 편의를 제공하</u></p>	<p>-② 뒷부분 삭제</p> <p>-<u>신설</u> ③ <u>정당한 편의제공의무</u></p>	

<p>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여야 한다.</p> <p>④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성별 이외의 내용 추가</p> <p>-⑤ 성별 이외의 내용 추가</p>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p> <p>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p> <p>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p>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p> <p>①누구든지 가정,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장애인 등에 대해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다음 각호의 괴롭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장애인 등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일체의 행위 2. 장애인 등에 대한 유기 방임, 신체적·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행위 3.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p>-제32조 조항 전면수정</p> <p>-① 괴롭힘의 종류 각호로 정리</p>	<p>-괴롭힘 조항을 전면 재구성</p> <p>: 괴롭힘 등의 종류를 각호로 정리하여 괴롭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 또한 언론 미디어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괴롭힘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성</p>

<p>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u>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u>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의 행위</p> <p>4. 장애인 등(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이나 행위</p> <p>5. 장애인 등(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및 행위</p> <p>6. 그 밖에 사회적 지위·관계, 장애의 유무·유형·정도 등을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장애인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표현 또는 행위</p> <p>②누구든지 언론 보도, 방송·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호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영화 등(이하 '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여 제작된 제작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p>	<p>-② 미디어에서의 괴롭힘 내용 규정</p>	
--	---	----------------------------	--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④ -⑥-->⑤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p>	
--	--	--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현행법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할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p>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p> <p>① <u>누구든지</u>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u>누구든지 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누구든지’로 변경 수범자 범위 확대</p> <p>-조항 ②~③-->제1절 (고용)으로이동</p> <p>-<u>신설 ② : 성평등 관련조항 추가</u></p>	<p>-직장보육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타조항으로 이동, 장애여성에 대한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남김</p>

<p>필요한 사항</p> <p>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p>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p>-④-->③</p> <p>-⑤-->④</p> <p>-⑥ 삭제</p>	
--	--	--	--

<p>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 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①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p>	
<p>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p>	<p>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 통합교육, 통합보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p>	<p>-③ 통합교육, 통합보육 추가</p> <p>-④ ‘장애를 이유로’ 삭제</p>	<p>단순히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배제뿐 아니라 통합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보육의 부분에 대하여 함께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연령별 필요에 따라 차별금지 규정</p>

<p>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u>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u>에 알맞은 <u>서비스</u>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u>차별없이</u>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u>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u>, 에 알맞은 <u>서비스와 교육</u>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① '장애를 이유로' 삭제 / '차별없이'로만 수정 -② 성별 위치변경 / 교육을 추가</p>	
<p>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u>강구</u>하여야 한다.</p>	<p>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u>다음 각호의</u>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u>마련</u>하여야 한다. 1. <u>정신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u></p>	<p>-②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책적 조치 각호로 정리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p>	

	<p>및 자료 배포</p> <p>2.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p> <p>3. 정신적 장애인이 언론, 방송, 통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p> <p>4. 그 밖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현행법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p>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p>	<p>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p>	<p>-① 시정권고 통보시 피해자, 진정인 포함</p>	

<p><u>관에게</u> <u>통보</u>하여야 한다.</p>	<p><u>관 및 피해자, 진정인에게</u> <u>통보</u>하여야 한다.</p>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피해자의 신청에</u>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u>위원회에 통보</u>하여야 한다.</p>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피해자 및 진정인의 신청에</u>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u>위원회 및 피해자, 진정인에 통보</u>하여야 한다.</p>	<p>-① 시정명령 신청시 진정인 포함 -⑤ 시정명령 통보시 피해자, 진정인 포함</p>	<p>시정명령 과정에서 시정명령의 신청 권한자를 확대하고, 시정명령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 이외에 피해자나 진정인 등 개별 이해관계자도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p>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현행법령	개정안	개정내용	개정이유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가한 자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징벌적손해배상 내용 추가	-법 제정당시 논의되었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 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 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3항의 내용을 제5조 제2항으로 이동(수정)함에 따른 문구 변경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④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으로 한다.		
	제48조의2(소송비용의 특례)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	- 신설	-소송비용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당사자가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제기가 어려움, 이에 비용 특례의 조항을 신설

	<p>자의 소송비용은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8조의3(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p> <p>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 및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는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협력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장애인 관련인을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등에 대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휴식,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p>	<p><u>-조항신설 : 차별행위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의무 규정 추가</u></p>	

	<p>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자 등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장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등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장애인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장애인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	--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제49조(차별행위) ①악의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형벌규정 형식에 맞게 수정</p>	
<p>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p>			
	<p>제51조(벌칙) 제48조의3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8조 ③에 따르는 벌금 규정 추가</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개정안 비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장애라 함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상업적 목적의 상품 및 용역광고**를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이용·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8.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19.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20.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1.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2.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3.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 또는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될 혐오표현 및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5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

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8. 그 밖에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정책·관행·절차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항은 제5조 차별판단 제2항으로 이동>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1항 삭제>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금지)누구든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과거 장애 경력이 있었던 자 및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현행법령>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의2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8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와 제3항에 따른 참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법적용의 원칙)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차별금지)

② 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로 이동>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및 보조인의 배치

7. 원활한 수유지원, 자녀상태 확인을 위한 소통방식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7. 8. 장애여성에서 이동>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나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에 대해 전학을 강요하거나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교육책임자는 장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장애를 고려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

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6.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신설>

7.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신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및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이 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현행유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출입문, 위생시설, 피난 및 대피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위한 보조인력(지원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를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인력 및 호출수단,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알기 쉬운 이용 및 대피 안내, 그 밖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재난 등 안전관리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① 누구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하 ‘안전관리상황’이라 한다.)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2.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장비 및 용품의 안전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유형별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밖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쉬운 말 설명,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저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

제21조(정보접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전면수정>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21호·제22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한국수어, 문자, 음성, 쉬운 말 설명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신설>

①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음성통역·쉬운 말 설명·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전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방송·통신·출판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우리말 녹음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한 경우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른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④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22조의2(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의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및 관광지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보조 인력 및 장비, 기기의 이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5.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음료대 및 판매대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배치
3.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읽기 쉬운 자료, 보청기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5.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6.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7.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장애인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제9항의 처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 및 기타 권리분쟁·인권침해·징계사건에 관한 조사·판정(조정·중재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사법기관 등'이라 한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 등은 해당 장애인이 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인적 지원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27조(참정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3.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 보조원의 배치

5. 그 밖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수어, 점자, 음성, 이해하기 쉬운 자료·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든지 수어, 점자, 음성, 이해하기 쉬운 자료·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 양육 등에 관하여 장애인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인의 입양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모·부성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 <신설>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각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③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가족, 가정, 생활공동체,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가족 등과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이 복지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30조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신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을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전면수정 및 추가>

①누구든지 가정,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장애인 등에 대해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다음 각호의 괴롭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장애인 등 관련자를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일체의 행위
2. 장애인에 대한 유기 방임, 신체적·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행위
3.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의 행위
4. 장애인 등(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나 행위
5. 장애인 등(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및 행위
6. 그 밖에 사회적 지위·관계, 장애의 유무·유형·정도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표현 또는 행위

②누구든지 언론 보도, 방송·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호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영화 등(이하 '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여 제작된 제작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③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 통합교육, 통합보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차별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성별, 에 알맞은 서비스와 교육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신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자료 배포
 2.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정신적 장애인이 언론, 방송, 통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이동>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 및 피해자,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및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 및 피해자, 진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가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④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으로 한다. <신설>

48조의2 (소송비용의 특례) <신설>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은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3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신설>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 및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는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협력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장애인 관련인을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등에 대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휴식,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자 등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장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지는 자, 차별행위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등 사실을 신고한 자 및 피해장애인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장애인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악의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제51조(벌칙) 제48조의3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